

SK스퀘어 일과 삶 균형 규정

선택적 근로시간제
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사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. 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.

1. 정산기간 : 4주

2.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: 160시간

② 회사가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,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.

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근로시간 단축

① 사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,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.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세부 사항은 [첨부 1. 근로시간 단축 제도]에 따른다.

②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사원은 단축된 1주 간의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. 단,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으로 한다.

③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(단,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3일 전)까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

① 회사는 여사원이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(다태아의 경우 120일)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 유산의 경험 등 법령에 정한 사유로 임신한 여사원이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분할하여 부여하며, 이 경우라도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

일(다태아의 경우 60일)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②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사원이 만 8세(또는 초등학교 2학년)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법정 육아휴직 1년을 포함하여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한다. 단, 법정 육아휴직은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다.

③ 출산 전후휴가,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중 사규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.

④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한다.